

# 학교도서관 업무 및 사서교사의 정원 · 배치 · 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School Library Works and the Staffing, Allocation, and Scope of Duties of Teacher Librarians

이 병 기 (Byeong-Kee Lee)\* 강 봉 속 (Bongsuk Kang)\*\*  
박 주 현 (Juhyeon Park)\*\*\* 임 정 훈 (Jeonghoon Lim)\*\*\*\*

### 목 차

- |                                         |                    |
|-----------------------------------------|--------------------|
| 1. 서 론                                  | 5.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방안 |
| 2. 선행 연구                                | 6. 결론 및 제언         |
| 3.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및 개정 경과                  |                    |
| 4. 학교도서관 업무 및 사서교사 배치 · 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 분석 |                    |

### 초 록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 업무와 사서교사의 정원, 배치 기준,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및 문헌 분석을 실시하고,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법의 도서관서비스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교수 · 학습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을 재정의하였다. 둘째, 도서관에 규정한 학교도서관 업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교육 · 문화 · 정보 ·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셋째, 사서와 사서교사의 공통적인 업무 외에 사서교사의 교수적 역할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focusing on the works of school libraries and the staffing, allocation criteria, and scope of duties of librarian teachers, and to propose revision plans of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To this end, relevant laws and literature were analyzed, and directions for legal amendments and specific amendment proposals were present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chool libraries were redefined based on the library service in the Library Act and the teaching-learning in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Second, overlapping content among the school library duties stipulated in the Library Act was deleted, and matters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education, culture, information, and leisure programs were added. Third, in addition to the common duties of librarians and librarian teachers, matters corresponding to the instructional role of librarian teachers were additionally presented.

키워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 사서교사 업무

School Library, Teacher Librarian,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Library Act, Teacher Librarian's Duties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isdoc@kongju.ac.kr / ISNI 0000 0004 6460 4911)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park51566@jnu.ac.kr / ISNI 0000 0004 6814 4449) (공동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mictoxic@kmu.ac.kr / ISNI 0000 0004 8339 2694)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5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2): 5-24,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2.00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13년에 발간한 한국도서관 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과 IFLA의 School Library Guidelines 등에서는 학교도서관이 갖는 이상적인 비전과 역할,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학교도서관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주체로서의 직원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것은 이상적인 기준을 지향하되, 궁극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국가의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방식과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그리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은 1994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의 명칭 변경, 그리고 2006년에는 다시 원래 명칭으로 회귀하며, 2025년 현재까지 많은 개정을 거쳐왔다. 「도서관법」은 기존에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관공의 도서관에 대한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정의, 학교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후 2007년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학교도서관진흥법」으로, 2015년에 대학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따로 관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의나 업무 등에 있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특히,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정의에 차이가 있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법」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으로서 사서교사 외에 실기교사, 사서 등의 자격 기준이 다른 인력을 구분 없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성격,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법적 정의는 해당 분야의 성격, 범위, 권리 의무 관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기능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현단계에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법적 성격 규정, 업무 범위, 전담 인력 배치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각 규정의 타당성과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련 법률의 종합과 분석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정의, 업무 범위, 전담 인력의 배치 및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관련하여 장우권, 박

주현(2013)은 처음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던 과정과 이후 개정의 목적, 주요 내용을 고찰한 후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장우권, 박주현, 2013). 그러나 이 연구는 2018년 사서교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 법령에 나타나는 양상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강봉숙(2018)과 김종성(2019)은 법 개정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사서교사 인력 수요와 인력 양성 규모의 문제를 규명한 바 있다. 한편, 강봉숙, 박주현(2019)은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인력 의무배치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사서교사 양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과정의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강봉숙(2023)은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인력 의무배치 법령을 준수한 학교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투입 자원의 전반적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1교 1 사서교사 의무배치가 시행된 시기 이후에는 학교도서관의 업무 및 사서교사 배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 제시된 학교도서관 업무, 사서교사의 배치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조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하여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구

체적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의 미비, 용어의 표준화 및 통일에 관한 문제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업무 및 사서교사의 배치 및 직무 범위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3.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및 개정 경과

학교도서관 관련 법률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사서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사서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2007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법령이 단일 법안으로 통합되었다. 제정 당시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국가의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제7조), 학교도서관 지원비와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제11조),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제13조),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제15조) 등 학교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체제를 잘 갖추고 있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당시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그러나 학교도서관 설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는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사사직원의 구분없이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키고 학교도서관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2019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10,280개 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839개 학교로 8.16%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시 교육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되거나 『도서관법』에서 사서직원을 ‘사서’로 통일하는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3·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후 학교도서관계의 숙원이었던 법 제12조의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변경하는 개정안

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8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 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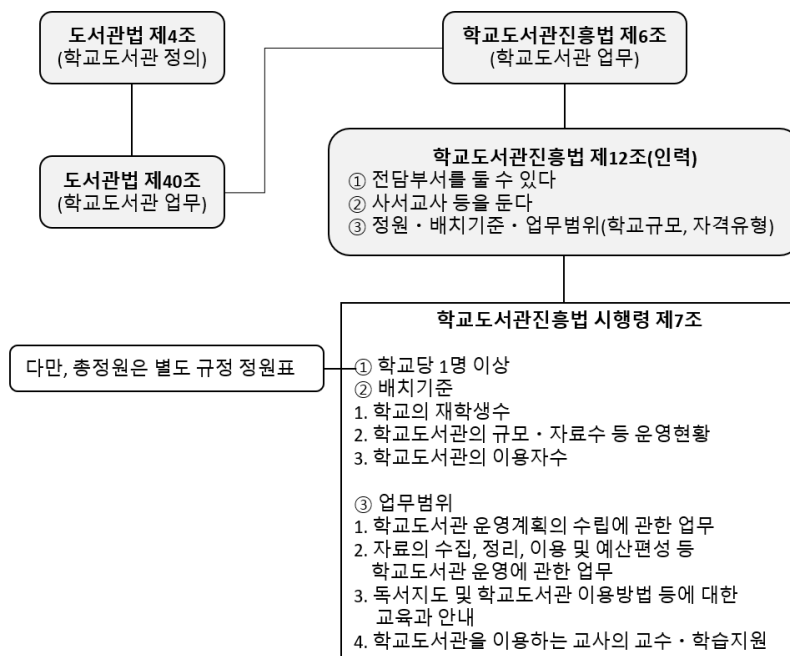
〈표 1〉 학교도서관진흥법 2018년 개정 사항

| 법령             | 구법                                                                                                                                                | 신법                                                                                                                                                                                                                                                              |
|----------------|---------------------------------------------------------------------------------------------------------------------------------------------------|-----------------------------------------------------------------------------------------------------------------------------------------------------------------------------------------------------------------------------------------------------------------|
| 『학교도서관진흥법』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br>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br>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br>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 8. 13., 2018. 8. 21.> |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 이전에는 “둘 수 있다”,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서 2018년 개정 이후에는 “둔다”,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변경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이처럼 법률은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되었으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단서 조항 즉,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사서교사 의무 배치를 모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숫자만큼만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에 의거 모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강봉숙, 2018). 따라서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목적과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학교도서관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전담 인력 관련 조항을 시급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서교사 등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에 관한 법률은 사서교사 정원이나 배치기준, 그리고 업무범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학교도서관 업무,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정합성을 유지



〈그림 1〉 학교도서관 업무 및 사서교사 배치 등 관련 조항

하고, 논리적 모순이나 상충되는 일이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4. 학교도서관 업무 및 사서교사 배치·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 분석

##### 4.1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정의

『도서관법』 제3조(정의)에서는 도서관, 도서관 자료와 함께 도서관서비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에서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른 각종 도서관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각종 도서관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처럼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소별로 나누어 그 차이점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시에 관한 차이이다. 『도서관법』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와 같이 학교의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타의 설명 어구 없이 “학교에서…”라고만 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범위에 대한 차이이다. 『도서관법』은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교원과 학생의…”로 규정하여 직원을 제외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학교도서관의 목적을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설정하다 보니, “학습·교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이 제외된 것으로 판단한다. 한 국가의 법령에서 동일한 대상 즉, 학교도서관을 다루면서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다른 것은 법령간의 상충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범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표 2> 관계 법령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의

| 구분 | 도서관법                                                                                                       | 학교도서관진흥법                                                                       |
|----|------------------------------------------------------------------------------------------------------------|--------------------------------------------------------------------------------|
| 정의 | <b>제4조(도서관의 구분)</b><br>②-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b>(제2조제2호)</b>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실을 말한다. |

에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⑤항에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규정으로 학교 구성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법령을 개정할 때, 「도서관법」에서 '직원'을 삭제하기 보다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직원'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차이이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학교도서관의 법률적 성격과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도서관 업무 및 사서교사 등의 직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서 관중을 구분함과 동시에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정의를 준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에 제시된 학교도서관의 목적을 개정하기보다는 “도서관서비스”의 내용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교수활동”을 통합하여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법」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규모나 설치 유형과 관계없이 도서관이

라는 용어 대신에 학교도서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 4.2 학교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항 이관

학교도서관 설치 및 업무에 관한 법적 조항은 「도서관법」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미 대학교서관의 경우에는 2015년 「대학교서관진흥법」을 제정하면서 대학교서관의 업무에 관한 조항을 「대학교서관진흥법」 제7조로 이관하였다. 반면, 2007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단독 법안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은 「도서관법」에 남아있고, 정작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대해 「도서관법」 제40조 ②항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이 「도서관법」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학교도서관 관련 법규가 이원화되고,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들이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대학교서관진흥법」 제정으로 대학교서관의 업무 조항을 이관하였듯이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을 「학교도서관진흥법」으로 이관하여 법률 체계의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완전성을 높여야 한다.

## 4.3 학교도서관의 업무

학교도서관 업무에 대한 법 조항을 「학교도서관진흥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그 내용의

〈표 3〉 관계 법령에 나타난 대학 및 학교도서관 업무·역할

| 도서관법                                                                                                                                                                                                                                                                                                                                           | 대학도서관진흥법                                                                                                                                                                                                                                                                         |
|------------------------------------------------------------------------------------------------------------------------------------------------------------------------------------------------------------------------------------------------------------------------------------------------------------------------------------------------|----------------------------------------------------------------------------------------------------------------------------------------------------------------------------------------------------------------------------------------------------------------------------------|
|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①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br>②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①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br>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br>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br>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br>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br>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br>②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br>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br>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br>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br>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br>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br>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②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br>③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 ③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br>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업무는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넘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결국 도서관 전담 인력인 사서와 사서교사의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도서관 업무와 공공도서관 업무는 「도서관법」에 제시되어 있고, 대학도서관의 업무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업무는 각각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관종마다 이용 대상자 층이나 서비스의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업무가 동일한 체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법령에 제시된 관종별 업무를 비교해 보면, 학교도서관 업무를 설정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관계 법령에 제시된 공공·대학·학교도서관의 6가지 업무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제1호와 제6호는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제4호는 다른 도서관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경우에 제5호에 각각에 해당하는 고유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제1호에 배치된 업무는 “공중을 위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학교교육에 필요한” 등 설립 목적에 따른 수식어구 외에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법」 제3조(정의) 제1호에 명시된 도서관의 정의(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



〈표 4〉 법령에 규정한 관종별 도서관의 업무 비교

| 공공도서관                                 | 대학도서관                                         | 학교도서관                                                                             |
|---------------------------------------|-----------------------------------------------|-----------------------------------------------------------------------------------|
| 도서관법 제32조<br>(공공도서관 업무)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br>(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 도서관법 제 40조<br>(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
|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
|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                                                                                   |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                                                                                   |
|                                       |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                                                                                   |
|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br>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
|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                                               |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br>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제2호(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제3호(독서 생활화 프로그램 등)는 공공도서관의 핵심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제2호에는 교수자를 위한 서비스(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3호에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로 구분하여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반면, 학교도서관의 경우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걸쳐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학교도서관의 고유한 교육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5호(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

을 통한 정보활용의 교육)에 배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업무 중 제2호(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는 1969년에 제정된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에서 인쇄자료는 물론 시청각 자료실 등의 모든 자료를 집중화하여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School Library Media Center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AASL, Department of Audiovisual Instruction of NEA, 1969).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 각 학교의 특수목적실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집중화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 특수목적실에서 각 부서에서 구입한 예산의 항목이나 관리 주체가 다른 자

료를 학교도서관에서 통합 관리, 이용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항목이다.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제1호(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더라도 기본적인 취지는 남아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업무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이 자리에 공공·대학교서관과 같이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교도서관 업무 제3호(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는 구입한 도서관자료 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학습자료에는 간단한 수업용 유인물은 물론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용 콘텐츠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가 발달하기 이전에 널리 사용해 왔던 시청각 자료보다는 교수·학습자료로 통일하고 전통적인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교도서관 업무 제4호(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의 경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사업) 제5호(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에 의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현재의 독서로 DLS(예전의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한국

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5호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 업무 제5호(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의 교육)는 학교도서관의 주요 교육 서비스를 규정한 부분이다. 도서관 이용지도,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교육”에서 협동수업 보다는 한국도서관 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11)이나 교육부의 정책문서인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도서관협력수업(교육부, 2024)으로 수정하여 용어상의 혼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서관 이용의 지도’, ‘정보활용의 교육’에서 관형적 조사 ‘의’를 생략하고, 학술적으로나 학교 현장에서 널리 쓰고 있는 ‘도서관 이용지도, 정보활용교육’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 업무 제5호(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의 교육)는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행위와 관련이 있고, 그 외의 포괄적인 교육·정보·문화·여가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업무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학교도서관 교육 서비스 외에 다양한 교육·정보·문화·여가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배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육·정보·문화·여가 등의 프로그램은 국제학교도서관협회(IASL) 등에서 학교도서관의 4대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IASL, 2025).

#### 4.4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및 배치기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에서는 사서교사 등의 의무 배치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전담 인력에 대한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역사에 뜻깊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학교도서관 제도의 근간인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도서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전담 인력의 임의 배치 조항이 법 시행 10년 만에 의무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다”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로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무척 크다(김중성, 2019).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임의조항이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붙어있는 단서 조항이 문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표 5> 관계 법령에 나타난 대학 및 학교도서관 업무·역할

| 학교도서관진흥법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br>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br>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br>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br>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br>1. 학교의 재학생수<br>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br>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br>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br>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br>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br>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br>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

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②항(사서교사 등을 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조항을 무력화하고 있다. 단서 조항에 명시된 사서교사 인원만 유지하면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법정 정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의 총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월 31일 입법 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2024년에 공립 학교에 배치할 교사의 증원을 확보하고, 당해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 인원을 차기년도 3월자로 신규 발령을 내는 인원으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 6〉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별표 형태로 제시된 정원표이며, 이 정원표를 보면 2024년에 사서교사 정원은 1,618명이다. 2024년에 사서교사 신규 T/O를 확보한 인원이 42명이므로, 이 인원을 추가하여 2025년에 적용할 정원표에는 1,660명이 사서교사의

총 정원이다. 2025년에 신규 사서교사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2026년도에 적용할 사서교사의 정원표는 그대로 1,660명이 유지되고, 이것만으로도 법령을 충족한 것이 된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총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사서교사의 법적 정원 확보 및 배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단서 조항(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은 미땅히 삭제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표 7〉에서 보는 바처럼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이러한 단서 조항이 포함된 배치 기준은 사서교사 밖에 없다. 이러한 단서 조항으로 인해 사서교사의 증원에 대한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게 되고, 보건교사 배치율(88.27%)에 비해, 사서교사 배치율(15.89)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표 6〉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

| 교사 구분  |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 |              | 전국 학교 수(10,280)<br>대비 배치율(%) | 전년대비 증가인원 |
|--------|-------------------------|--------------|------------------------------|-----------|
|        | 2024년도 적용 정원표           | 2025년 적용 정원표 |                              |           |
| 보건교사   | 9,013                   | 9,075        | 88.27                        | 62        |
| 영양교사   | 6,830                   | 6,880        | 66.92                        | 50        |
| 사서교사   | 1,618                   | 1,660        | 15.89                        | 42        |
| 전문상담교사 | 4,137                   | 4,220        | 41.05                        | 83        |

〈표 7〉 비교과 교사의 배치 및 정원에 관한 법령

| 교사 구분 | 관계법령                                                                                                                                                                                                                    |
|-------|-------------------------------------------------------------------------------------------------------------------------------------------------------------------------------------------------------------------------|
| 보건교사  | 학교보건법 제15조: ②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br>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
| 영양교사  | 학교 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
| 전문상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서교사 등의 배치 기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제시하고 있다. 제6조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이러한 배치 기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서 “사서교사 등을 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항에서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학교의 재학생수,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서교사 등을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3항(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의 취지에 맞게 “다만,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2명을 두며, 2명을 두는 경우에 최소 1명은 사서교사를 둔다.”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를 개정하면, 첫째,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를 충족하고, 둘째, 학교 규모에 따라서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셋째, “2명을 두는 경우에 최소 1명은 사서교사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원·배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2명을 두도록 제안한 것은 「학교보건법」 제15조(②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표 8〉 학급수 따른 사서교사 배치 수요

| 학교급  | 학급수별 학교수   |            |            |        |
|------|------------|------------|------------|--------|
|      | 1~17학급     | 18~35학급    | 36학급 이상    | 합계     |
| 초등학교 | 3,093      | 2,028      | 964        | 6,085  |
| 중학교  | 1,339      | 1,168      | 117        | 2,624  |
| 고등학교 | 416        | 858        | 141        | 1,415  |
| 소계   | 4,848(48%) | 4,054(40%) | 1,222(12%) | 10,124 |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를 준용한 것이다.

〈표 8〉과 같이, 교육통계연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에 따르면 36학급 이상의 학교가 12%에 이르고, 18학급 이상-36학급 미만의 학교가 40%에 이른다. 따라서 보건교사 뿐 아니라 사서교사 배치에도 학교 규모별 배치에 대한 법정 기준 추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5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③항에서는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를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으로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사서’ 등의 자격 구분없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자격 구분없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는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에 따라서 정하도록 규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법』 제40조(학교도서관의 업무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나 사서교사와 사서 등 자격 유형별로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서교사 등의 업무 범위 항목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사가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도서관협력수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도서관법 제 40조(학교도서관의 업무 등)의 업무를 『학교도서관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는 자격 구분없이 ‘사서교사 등’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표 9〉 학급수 따른 사서교사 배치 수요

| 도서관법 제 40조<br>(학교도서관의 업무 등)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br>(사서교사 등)                           |
|--------------------------------------------|--------------------------------------------------------|
|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
|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                                                      |
|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 -                                                      |
|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                                                      |
|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
|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br>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

할 업무의 성격을 갖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사로서의 사서교사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업무 범위로서 “사서교사는 학생의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와 협력에 의한 도서관활용수업 및 도서관협력수업을 운영한다.”로 개정하면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열거하지 않아도 자격 유형에 따른 업무 범위를 간단하게 규정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5.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방안

사서교사 등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과 배치기준, 그리고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와 12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정원·배치 기준·업무 범위는 학교규모와 자격 유형에 따라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조문 간에 불일치 혹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업무, 사서교사 정원 및 배치기준,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법안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과 법안 개정 방안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념적, 법적 정의에 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적 차이가 있는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수·학습 활동”에 더하여 「도서관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서관서비스”의 개념을 병합하여 재정의 한다.

둘째, 도서관서비스의 개념은 「도서관법」 제3조(정의) 제3호,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

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의 내용을 명확히 참조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에 “도서관서비스(도서관법 제3조제3호)”의 용어를 추가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혹은 도서관실을 「도서관법」과 같이 도서관실을 삭제하고 도서관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셋째, 「도서관법」에서 학교도서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을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도 수용한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법령 조문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법」에 있는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내용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로 이관한다.

둘째, 법령에 제시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업무와 같이, 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학교도서관 고유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셋째, 현행 「도서관법」에 제시된 학교도서관 업무 제3호(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교수·학습자료(디지털 자료 포함)로 수정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 기준·업무 범위 관련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반영된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는 그대로 두고, 이와 관련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 기준·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개정한다.

둘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의 정원 관련 부분(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는 유지하고, 단서 조항으로 붙어 있는 별도의 정원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셋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2명을 두되, 2명 중 최소 1명은 사서교사를 둔다)와 같이 개정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를 충족시킨다.

넷째, 일시적으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확보한 사서교사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할 때,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우선 배치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한다.

다섯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제시된 사서교사 등의 업무 범위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의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자격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교사와의 협력에 의한 도서관활용수업 및 도서관협력수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격 유형별 업무 범위를 구분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정 방향을 바탕으로 개정 법률안을 종합하여 현행, 개정안의 비교표 형태로 제시하면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적 정의와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다.

<표 11>은 사서교사 정원·배치 기준·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다.



〈표 10〉 학교도서관 정의 및 업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정의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br>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실을 말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br>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교사,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 학교도서관 업무 |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br><br>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br>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br>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br>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br>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br>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br><br>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br>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br>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br><br>1. (현행 유지)<br>2. 교육·문화·정보·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br>3. 교수·학습 자료(디지털 자료 포함)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br>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제5호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br>5.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도서관협력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교육<br>6. (현행 유지)<br><br>② ③ ④ (현행 유지) |

〈표 11〉 사서교사 정원·배치기준·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br>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br>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br>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br>① (현행 유지)<br>② (현행 유지)<br>③ (현행 유지) |

| 현행                                                                                                                                                                                                                                                                                                                                                                                                                                                                                                                                                                                                                                                                                                 | 개정안                                                                                                                                                                                                                                                                                                                                                                            |
|----------------------------------------------------------------------------------------------------------------------------------------------------------------------------------------------------------------------------------------------------------------------------------------------------------------------------------------------------------------------------------------------------------------------------------------------------------------------------------------------------------------------------------------------------------------------------------------------------------------------------------------------------------------------------------------------------|--------------------------------------------------------------------------------------------------------------------------------------------------------------------------------------------------------------------------------------------------------------------------------------------------------------------------------------------------------------------------------|
| <p>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p> <p>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재학생수</li> <li>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li> <li>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li> </ol> <p>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li> <li>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li> <li>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li> <li>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li> </ol> | <p>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2명을 두며, 그 중 최소 1명은 사서교사를 둔다.</p> <p>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서교사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다만, 학교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사서교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와 협력에 의한 도서관활용수업 및 도서관협력수업을 운영한다.</p> |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사서교사의 정원, 배치 기준,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 조항의 개정 방향과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법적, 개념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도서관서비스(도서관법 제3조제3호) 개념을 추가하고, 교수·학습 활동과 도서관서비스를 포괄하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법」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직원을 「학교도서관진흥법」에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둘째, 도서관법의 학교도서관 업무 및 역할 관련 내용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

관의 업무)로 이관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도서관 고유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교육·문화·정보·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제시하고, 자료관리 및 이용 관련 사항은 삭제하였다.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교수·학습자료(디지털 자료 포함)”로 수정하였다.

셋째, 사서교사 등 정원·배치 기준·업무 범위 관련 개정 방향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는 유지하고,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 기준·업무 범위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당 1명 이상”의 정원 기준은 유지하되, 별도 정원 규정 관련 단서 조항은 삭제하도록 제안하였다. 36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2명 이상의 사서교사 등을(최소 1명은 사서교사) 두도록 명시하여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을 일치하도록

록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서교사 우선 배치 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우선 배치 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제안하였다. 사서교사 업무 범위에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교사 협력에 의한 도서관 활용 수업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육부, 국회 등 이해 당사자에게 심도있게 검토되어 개정 발의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 사서교사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게 돕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봉숙 (2018). 사서교사와 타 비교과 교사의 배치 비교를 통한 사서교사 배치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27-47. <http://doi.org/10.4275/KSLIS.2018.52.2.027>
- 강봉숙 (2023).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231-248.
- 강봉숙, 박주현 (2019).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239-259. <http://dx.doi.org/10.16981/kliss.50.3.201909.239>
- 교육부 (2024).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학교도서관진흥법.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 김중성 (2019). 학교도서관진흥법시대의 과제와 전망: 인력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159-180. <http://dx.doi.org/10.16981/kliss.50.4.201912.159>
- 장우권, 박주현 (2013).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335-358. <http://dx.doi.org/10.16981/kliss.44.3.201309.335>
- 한국도서관협회 (2013).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ASL, Department of Audiovisual Instruction of NEA (1969).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 Chicago: ALA.
- IAS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hip) (1993). IASL Policy Statement of School Libraries, 1993. Available: <http://www.iasl-slo.org/policysl.html>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Woo-Kwon & Park, Joo-Hyeon (2013). Problems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nd

- directions for refor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335-358. <http://dx.doi.org/10.16981/kliss.44.3.201309.335>
- Kang, Bong-Suk & Park, Joo-Hyeon (2019).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239-259. <http://dx.doi.org/10.16981/kliss.50.3.201909.239>
- Kang, Bong-Suk (2018).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by a comparison between teacher librarian and other teachers not-teaching the subject mat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27-47. <http://doi.org/10.4275/KSLIS.2018.52.2.027>
- Kang, Bong-Suk (2023). A study on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according to the manpower allocation under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3), 231-248. <http://doi.org/10.4275/KSLIS.2023.57.3.231>
- Kim, Jong Sung (2019).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of the era of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with a focus on manpower issu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159-180. <http://dx.doi.org/10.16981/kliss.50.4.201912.159>
-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5).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vailable: <https://www.law.go.kr/LSW/main.htm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24). *The 4th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chool Libraries (2024-2028)*.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3). *Statistical Year Book of Education*. Sejo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